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0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이정헌・박민규・이성윤

박수현 · 양문석 · 이수진

정진욱 • 박범계 • 강유정

황정아 · 김기표 · 김문수

김 현 • 저현희 • 채현일

박희승 · 김영환 · 문금주

이광희 • 최민희 • 박선원

안태준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사회적 혼란 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4,08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53.6%, 2021년 57.9%, 2022년 58.5%로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61%인 2,49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 매체 기준 열람 차단으로 피해 구제된 건수는 2023년 471건에 불과했음.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전체 1,158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고, 이 중 인터넷신문은 87%인 1,007건으로 드러나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 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 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		
	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		
	<u>여야 한다.</u>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생 략)	대한 특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2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			
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는 정		
	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		
	<u>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